

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	161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5. 6. 27
제안자 : 조정희 의원의외 6인

1. 주 문

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사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과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04 회계연도 세입·세출 결산승인안,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 7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자 함.

2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하구청장이 제출한 2004 회계연도 세입·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동법 제출할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운용을 유도하고 정확한 재정수요 및 수입예측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자원배분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구성위원정수 : 7명
- 나. 위원선임 : 각 상임위원회별 배정위원을 추천 받아 본회의 의결로 선임
- 다. 상임위원회별 위원배정 : 총무위원회 3명, 사회도시위원회 4명
- 라. 활동기간 : 2004회계연도 세입·세출 결산 승인안·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▷ 제129회 제1차 정례회

4. 관계법령

- 가.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
- 나.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